

# 칠레산 농산물이 몰려온다

## -한·칠레 FTA 협정 추진방향-

지난 2월초 한국과 칠레의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두 나라는 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한·칠레의 FTA 발효로 자유화 대상이 되는 농산물 품목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한**국과 칠레간 FTA 협정의 체결로 칠레산 과일 등 수입과일이 출하될 경우 국내시장의 과일공급 과잉으로 농가의 소득저하가 우려되며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피해 예상품목의 폐원 추진과 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칠레산 과일의 국내 출하 가능 시기는 국내산 사과와 배의 저장과 일 출하시기와 경합할 가능성성이 높다. 과일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수요자의 소비 행태 변화 정도가 높은 편이므로 수입과일의 품질이 좋고 수확 후 곧바로 국내에 출하될 경우 국내산 저장 과일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검역규제로 포도와 키위를 제외한 생과의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이번 협상으로 검역 분야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사과, 배와 같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칠레산 과일의 수입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과수농업은 생산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과수농가의 소득 하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일부 주산지의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불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칠레와의 FTA 협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로인해 나타나게 될 과수농가의 소득하락으로 인한 영농 포기, 재배규모 축소에 따른 손실, 지역경제의 악화 등 국내 과수농업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향후 대책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산 과일이 국내시장에 출하되면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불가피 하므로 저수고 밀식재배(왜성재배, Y자 밀식 등)와 같은 생력화와 저비용 과원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의 과일소비 행태가 고급화됨에 따라 고급품과 저급품간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으므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일의 이미지 개선 및 품질 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물량 위주의 생산 방식에서 품질 위주의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철저한 간벌 및 적과 실시, 완숙과의 수확 및 출하를 통한 품질향상을 꾀해야 한다.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품질관

리를 위한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도입 등 생산된 과일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상표관리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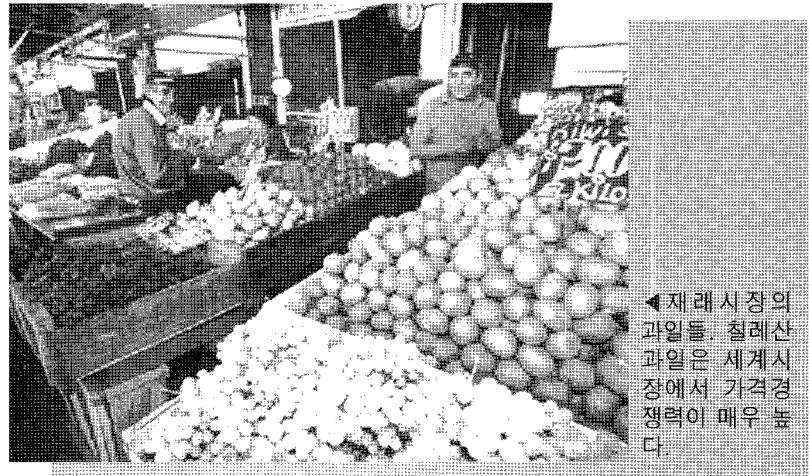
고품질의 가공품 원료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국내 과일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으며 기존의 부가가치 창출형 가공사업은 국내 대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므로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보다는 저급품의 시장 격리 차원의 가공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가공품의 원료는 과수농가에서 원가로 공급하고 가공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발생 부분은 저급품의 시장격리에 따른 가격 상승폭 중 일정부분을 농가로부터 자조금 형식으로 각출하여 보전하며 생과시장의 가격 지지를 위한 저급품 시장 격리 차원의 가공산업은 과수농가의 자조금과 정부의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운영한다.

그리고 재배 면적 및 단수 증가에 의한 국내 과일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의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수요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단지의 지정 및 철저한 관리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지속적 유지를 위한 품종개량과 품질고급화를 지향하도록 한다.

중·저품질의 과일시장은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없으므로 수확



◀재래 시장의 과일들. 칠레산 과일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다.

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과일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

또한 유통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운송 및 보관비용 등 유통 비용을 절감, 시장 가격 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과일의 공급으로 과일 수요의 증대효과를 꾀하는 등 과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급화와 표준화 기준을 확립하고 시행 한다.

과일의 생산량 조정, 품질향상, 농작업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령 및 경제성이 낮은 수목의 적극적인 간벌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검토한다.

품목별 자조금제는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을 주도할수 있고 WTO규정의 정부보조 제한 문제를 일정 수준에서 극복할수 있으므로 과수농업의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다.

정부의 지원은 재원 조달의 문제

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단기적 지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자조금 부과대상자의 선정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조금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모든 당사자(단체)이어야 한다. 즉 생산자, 유통업자, 과일 수입업자 등을 들 수 있다.

자조금의 운영 주체는 품목별 생산자 단체이고 활용범위는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협약에 의해 결정될수 있으며 일부 정부 및 자체의 보조금 지원도 병행해야 하므로 지원자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범위의 설정이 가능하다.

참고로 자조금은 과일의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가격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판촉, 생산기술 개발 및 유통개선 관련 조사 및 연구, 과수농업 관련 정보 수집 및 생산자 교육 지원, 가공사업 활성화 등 과일 출하량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수 있다.

## 기획특집 4

### 안철례 FIA 양어 유영별 대상품목

양 어 유 영	대 상 품 목
제외	쌀, 사과(신선), 배(신선)
계절관세	포도(신선): 11월부터 4월까지
DDA협상	채소·화훼류: 고추, 마늘, 양파, 캐파, 당근, 잎담배 등 곡류: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축산물: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 커드 등),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뉴유 등 과실류: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쥬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기타: 수박, 녹차, 흥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침깨 등
TRQ제공+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 조제 저장), 유팡(1,000톤), 치우(280톤), 맨더린(100톤), 기타 채소(100톤)
DDA협상	조제분유
이후 논의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달기(조제 저장), 가공품, 혼합쥬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차조제품 등
16년내 철페	축산물: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 설육(소 등), 닭고기(미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등 채소화훼류: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 과실류: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 저장, 조제 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매론, 괴일쥬스(오렌지, 사과, 복숭아), 채소쥬스 등
10년내 철페	기타과실쥬스
9년내 관세 철페	과실류: 복숭아·통조림, 잼, 주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 저장)
7년내 관세 철페	축산물: 칠면조 고기(TRQ 600톤 제공) 곡류: 옥수수(중자), 원두, 콩(냉동), 감자 등 채소류: 기타 채소(냉동), 균질 채소 등 기타: 호두, 나무딸기, 수프 등
5년내 관세 철페	축산물: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일제리, 뿔, 발굽, 사양 등 화훼류: 튜올립, 백합, 기타화훼(후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 난초, 카네이션, 절화류(튜올립 등) 등 채소류: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승이버섯(냉동), 버섯(일시 저장), 후추, 계피, 조제 저장 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기타: 산림수, 아몬드, 낫트류, 커피, 클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미기린, 당(맥아 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 저장과실, 조제 저장원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즉시 관세 철페	축산물: 총우, 총돈, 총게,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곡류: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씨, 중자, 당등 기타: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클라베이스, 커피 등

## 한진레FTA 양자 세이프가드(SG) 조치

한진레FTA 농산물 양자SG		WTO/SG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피해 우려로 시장교란(market disturbance) 발생</li> <li>피해 및 우려를 판단할 객관적 요소에 관한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대적, 상대적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초래 및 초래의 우려</li> <li>시장 점유율, 가동율, 고용 등 객관적 요소 종합 고려</li> </ul>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감축의 정지</li> <li>MFN 세율 또는 FTA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 인상 또는 수량 제한</li> </ul>
불동기간	제한없음	최대 4년(8년까지 연장 가능)
잠정조치	120일간 잠정조치 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및 우려에 관한 명백한 증거하에 200일간 잠정조치 불동</li> </ul>
사전협의 및 수출국의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국 요청시 보상 협의</li> <li>30일 이내 미협의시 SG불동 및 수출국 보복조치 가능</li> </ul> <p>동등한 수준의 양허 정지 및 관세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적인 사전 협의</li> <li>30일 이내 미협의시 SG불동 및 수출국 보복 조치</li> </ul> <p>*절대적 수입 증가인 경우 3년 간 보복 금지</p>

## TQ+DDA협상 이후 논의 품목 수입실적이 많은 품목

품목(톤)	TQ제공(A)	2001 수입(C)	A/C	비고(국내생산)
쇠고기	400	166,000	0.06%	163,000
닭고기	2000	83,000	2.4%	267,000
유장	1000	38,000	2.6%	-
기타채소(건조)	100	1,538	6.5%	653,000
계	3,300톤	288천톤	1.1%	

## TQ+DDA협상 이후 논의 품목 수입실적이 많은 품목

품목(톤)	TQ제공(A)	국내생산(B)	A/B	비고(2001 수입)
맨더린	100	645,000	0.02%	58
자두	280	58,000	0.5%	-
계	380톤	703천톤	0.05%	